자료번호	A1-2003-0040
자 료 명	살인범죄 수사 및 재판 기록조사

살인범죄 수사및재판기록 조사표

1. 표본번호 :	
1. <u>44. C. C </u>	
2. 조사 장소 :검찰청지청	
3. 사건번호 형제번호형제 재판번호(1심)	
4. 작성자 :	
5. 조사일시 : 2003년월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실(02-3460-5123)

A. 사건일반

1. 죄명

(1) 내란목적살인

(2) 살인

(3) 살인미수

(4) 살인예비

(5) 살인음모

(6) 존속살인

(7) 존속살해

(8) 영아살해

(9) 동의살인

(10) 촉탁살인

(11) 승낙살인 (12)위계동의살인

(13) 위력촉탁살인

(14) 위계승낙살인

(15) 위력승낙살인 (16) 위계자살결의

(17) 강간살인

(18) 준강간살인

(19)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20) 인질살해

(21) 강도살인

(22) 해상강도살인

1-1. 위의 제명 이외의 죄명

___건; 전부 기재

2. 범죄자수 : 총 ___명

2-1. 남 __명

2-2. 여 __명

3. 피해자의 수 : 총 ___명

3-1. 남 __명 3-2. 여 __명

4. 사건발생 일시

____년 __ 월 __ 일 __ 요일 오전/오후 _ 시 _ 분경

5. 사건발생지

(1) 서울

(2) 부산

(3) 인천

(4) 대전

(5) 대구

(6) 광주

(7) 울산 (12) 경북

(8) 경기 (13) 경남

(9) 충북 (14) 전북

(10) 충남 (15) 전남

(11) 강원

B. 피의자 (명중째)			
1. 성별 (1)남	(2)녀			
2. 사건 당시 연	령 : 만 /	સ <u>ી</u>		
 거주지 (1) 특직할시 	(2) 중소도시	(3) 군소재지	(4) 읍면소재지	(5) 촌락(?)
 4. 주소지 (1) 서울 (6) 광주 (11) 강원 (16) 제주 	(2) 부산(7) 울산(12) 경북	(3) 인천 (8) 경기 (13) 경남	(9) 충북	(10) 충남
(5)고재	(2)초졸(6)고퇴(10)전문대졸(14)대학원재		(8)전문대재 (12)대퇴	
6. 종교 (1)개신교 (5)무속	(2)천주교 (6)기타()		(4)천도교 (8)미상	
7. 직업 :	(분류코드표?	참조) / □ 미상		
8. 직업안정성 (1) 정규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무직	(5) 미상
9. 소득수준 (1) 상	(2) 중	(3) 하		
10. 피의자의 월	평균수입 :	만원		
	민			

(4)월세	집(부모집 포함) ((사글세) (- 등 숙박업소 (5)친척집 또	는 친구집 (6		ት 취)
13. 혼 ⁹ (1) 미국 (5) 사학	혼 (2) 기혼		기혼별거 (4 가출 (8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4-10.	의자의 동거가족(주) 조부모: (1) 조부모 아버지: (1) 친부 어머니: (1) 친모 배우자: (1) 유 자녀: (1) 유 고자·손녀: (1) 유 미혼형제: (1) 유 기혼형제: (1) 유 기혼형제의 배우자	(2) (2) (2) (2) (2) (2) (2) (2) : (1) 帝 (1) 帝	조부 (3 계부 (3 계모 (3 무 무 무 무	3) 조모 3) 무 3) 무	(4)무	
	. 기타 동거인 (구체 과횟수(유죄확정 받\ 죄경력		총 회)
연번	죄명	처분일	처분관서		처분결과	
1						
2						
3						
4						

9							
10							
11							
12							
13							
14							
15							
(1) 과 (2) 범 (3) 정	신질환 여부 거 정신질환을 앓은 적 행당시 정신질환을 앓는 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	고 있는 중	이었다				
(1) 과	 18. 약물복용여부 (1) 과거 약물복용경험이 있다 (2) 범행당시 약물복용중이었다 (3)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 						
(1) 알	 19. 알콜중독여부 (1) 알콜중독 경험이 있다. (2) 범행당시 알콜 중독중이었다. (3) 알콜중독이었던 적이 없다. 						
20. 자살시도 여부 (1)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 (2) 자살시도 경험이 없다.							
21-1. 21-3.	의자의 신체적인 특성 키 cm 지능지수(IQ)	-					
22. 기	타 피의자의 개인적 특	-성 (성장혼 	반경, 정신이상 ⁻ 	ਨ) 			

1. 피해자의 수 1-1. 남 <u></u> 명 1-3. 살인 이외	1-2			면			
2. 피해자 피해	당시 연령 : 만	-	_ 세				
3. 피해자 직업 (분투			미상				
4. 종교 (1)개신교 (5)무속							
(4) 가해자의 지	<부모 나녀 <u>-</u> - - - - - - - - - - - - - - - - - -	상	(5) 가해자의(8) 가해자의(11) 우연히 명	형제 이웃	(3) 가해자의 (6) 가해자의 (9) 가해자의 - 관계	다른 친	
5-1. 피해자와 (1) 동거	가해자의 동거 (2)						
6. 사건 당시 ^교 6-1. 음주여부 6-2. 약물복용 [©] 6-3. 정신상태	: (1) 겨부: (1)	약들	물비복용상태	(2) 약		(3)	만취상태
7. 피해자측(가· (1) 제출		•		· 여부			
8. 피해자측(가· (1) 선처바람		-	내로처벌원함	(3) 강학	격한 처벌원함		

C. 피해자

D. 사건과정				
1. 범죄자수 : 총명 1-1. 남명 1-	-2. 여명			
1-3. 공범자간의 관계 (1)배우자·애인 (2 (5)사회친구·선후배 (6 (8)같은 범죄단체 성원(전문) (10)우연히 만나 모르는 사람)직장동료 범죄집단)	(7)교도소· (9)단순 <i>거</i>	에서 만난사이 래자	(4)고향친구·선후배)
2. 피해자의 수 : 총명 2-1. 남명 2-	-2. 여명			
3. 범행당시 상황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물리 (2) 피해자가 피의자를 물리 (3) 피의자와 피해가 물리적 (4) 피의자와 피해가 언어적 (5) 가해자와 제3자의 싸움증 (6) 피해자와 제3자의 싸움증 (7) 피해자 취침중 (8) 피해자 일하는 중 (9) 피해자 담화중 (10) 피해자 보행중 (11) 피해자 정신잃음 (12)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염 (13) 기타 (구체적으로:	적으로 공격중 으로 싸움중 으로 싸움중(말 중 중			
3-1. 피의자 및 피해자 이외	에 사건 현장여	에 함께 있으	었던 사람 (단순	: 목격자 제외)
피해자와의 관계 1 2 3 4	피의자와	·의 관계	٨}.	건당시 상황
 4.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 (1) 출혈과다 (2) 흉기에 (4) 질식 (5) 독극물 	에 의한 사망		3) 둔기에 의힌 6) 쇼크에 의힌	
(7) 기타 (구체적으로 :				/

5. 범행의 계획성여부		
(1) 우발적	(2) 계획적+우발적	
(3) 계획적	(3) 다른 범죄의 부수적 결과	
6. 범행장소		
(1) 피해자의 주거	(2) 피해자의 영업·근무지	
(3) 가해자의 주거	(4) 가해자의 영업·근무지	
(5) 양자의 공동주거	(6) 양자의 공동 영업·근무지	
(7) 숙박업소	(8) 요식업소·유흥업소	
(9) 시장 또는 백화점	(10) 자가용 등 승용차 안에서	
(11) 대중교통수단 등	(12) 야산 등 인적이 드문 곳	
(13) 노상, 공원, 야외	(14) 기타 (구체적으로:)
7. 사건의 직접적 동기 (기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것)	
(1) 돈을 빼앗기 위해	(2) 상속이나 보험금	
(3) 채권·채무관계	(4) 사업·업무상 문제	
(5) 금전문제	(6) 기타 경제적인 갈등	
(7) 모욕·비하·학대		
(9) 불화·가족문제		
(11) 자신의 처지를 비관		
(13) 사소한 말다툼으로		
(15) 타인의 권유·부추김		
(17) 호기심·우연한 이유		
(19) 원한·보복심·분노		
(21) 기타(구체적으로:		
7-1. (경제적인 문제였다	면) 피해액 :원	
. 1. (0 11 12 2 17)		
8. 범행시 피의자의 상태		
	구수상태 (2) 약간의 음주상태 (3) 만취상태	
	약물비복용상태 (2) 약물복용상태	
8-3. 정신상태 : (1) 정싱		
0 0, 0 0 0 1, 1 (1) 0 0		
9. 흉기·도구의 사건관련	성부	
(1) 피의자가 흉기·도구 /		
(3) 쌍방이 흉기·도구 사는		
(0) 00 1 8/1-1 /1		
9-1. 살인도구의 종류		
	(2) 칼·낫 등 (3) 몽둥이·둔기	(4) 중.끄
	(6) 손·발 등 신체사용 (7) 자동차등 운송수단	
(8) 기타(구체적으로:		
(~/ · · (· - - · <u> </u>		

9-2. 살인도구준비관계 (1) 사용하지 않음 (3) 다른 목적을 위해 사 (5) 피해자로부터 빼앗음	전 준비 (4)	범행을 위해 사전준비 현장에 있는 물건을 이용 기타(구체적으로:)	
9-3. 처음 흉기를 사용한 (1) 피의자		(3) 제3자		
9-4. 흉기가 처음 사용되 (1) 사건이 시작되자 마지 (3) 사건이 끝나기 직전	아 (2) 사건이	시작된지 얼마 후 세적으로 :)	
9-5. 처음 사용된 흉기의 (1) 상대방을 공격 (3) 자신 또는 타인을 방	(2) 상대방을	- 위협·협박 세적으로 :)	
10. 사건이 발생하기 전(1) 좋은 편		의 감정 (3) 나쁜 편	(4) 미상	
11. 피해자와 가해자의 파(1) 친밀하였다(4) 모르는 관계였다	(2) 원만하였다	(3) 갈등관계였다)	
12. 사건이 발생하기 전 (1) 유		등 존재 여부		
(4) 모욕·비하·학대	 (2) 불화·가족문제 (5) 기타 정서적 갈등 (7) 채권·채무관계 (10) 기타 경제적인 	(8) 사업·업무상 문제		_)
12-2. (갈등이 있었다면) (1) 가해자		(3) 상호적	(4) 제3자	
12-3. (갈등이 있었다면) (1) 지속적		(3) 일회성		
12-4. (갈등이 있었다면) (1) 1년이상 (2) 6개 (6) 1주일 이상 (7) 3일	월 이상 (3) 3개월 ㅇ]상 (4) 1개월 이상 (5) 15 } (9) 24시간 이내	5일 이상	

 13.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의 (1) 피의자가 폭행·학대 (3) 피해자가 폭행·학대 (4) 폭행·학대의 사실이 없었- 	(2) 쌍방간에 폭형 (3) 제3자가 폭행	y·학대	무	
13-1. 폭행·학대가 있었을 경 (1) 육체적 폭행 (2) (4) 복합적인 학대·폭행			[†] 학대	
13-2. 폭행·학대가 있었을 경(1) 지속적 (2)				
13-3. 폭행·학대가 있었을 경 (1) 1년이상 (2) 6개월 여 (6) 1주일 이상 (7) 3일 이성	이상 (3) 3개월 이상	(4) 1개월 이상	(5) 15일 이상	
14. 사건의 직접적 계기, 촉발 (1) 유 (2)		의 존재여부		
14-1. (분쟁·폭력이 있을 경우 (1) 가해자 (2)		(3) 상호적	(4) 제3자	
14-2. (분쟁·폭력이 있을 경우 (1) 치정·애정문제 (2) (4) 모욕·비하·학대 (5)) 불화·가족문제		불안 등	
(6) 상속·보험금(7)(9) 금전문제(10)(11) 기타(구체적으로:	0) 기타 경제적인 갈등	(8) 사업·업무상	문제)
15. 사건진행과 관련된 피의가 15-1. 상대방에 대한 욕설·모 15-2. 상황을 조정·진정시키다 15-3. 사건을 회피·도망하려는 15-4.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15-5. 타인에게 원조·구조를	고욕 : (1) 있음 려는 시도 : (1) 있음 는 시도 : (1) 있음 ·순응 : (1) 있음	(2) 없음 (2) 없음 (2) 없음 (2) 없음 (2) 없음		
15-6. 흉기·도구 없는 육체적 15-7. 상대방을 흉기·도구로 15-8. 상대방에 대한 흉기·도	付 폭력 : (1) 공격 위협 : (1) 공격 ∈구의 사용 : (1) 있음	(2) 방어(2) 방어(2) 없음	(3) 없음 (3) 없음	
15-9. 상대방의 위협·공격에	네정 • (1) 찍う네양	(4) エコザゼ	(3) 切るほ百	

16. 사건진행과 관련된 피	취해자의 행동내용					
16-1. 상대방에 대한 욕실	설·모욕 :	(1) 있음	(2)	없음		
16-2. 상황을 조정·진정시	시키려는 시도 :	(1) 있음	(2)	없음		
16-3. 사건을 회피·도망하	하려는 시도 :	(1) 있음	(2)	없음		
16-4. 상대방의 요구를 -	수용·순응 :	(1) 있음	(2)	없음		
16-5. 타인에게 원조·구조	조를 요청 :	(1) 있음	(2)	없음		
16-6. 흉기·도구 없는 육	체적 폭력 :	(1) 공격	(2)	방어	(3)	없음
16-7. 상대방을 흉기·도구	구로 위협 :	(1) 공격	(2)	방어	(3)	없음
16-8. 상대방에 대한 흉기	기·도구의 사용 :	(1) 있음	(2)	없음		
16-9. 상대방의 위협·공격	벽에 대항 :	(1) 적극대	대항 (2)	소극대항	(3)	대항않음
 17. 가해자가 범행후 반성 (1) 매우후회 18. 범행 직후 사건내용 (1) 피해자가 잘못 	(2) 약간후회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감정		(4)	미상
19. 범행후 가해자의 행동 19-1. 자수 : (1) 했음 19-2. 도피 : (1) 했음 19-3. 범행은폐 : (1) 했 19-3-1. 범행은폐 내용(3	(2) 안했 (2) 안했 음	l음 (2) 안했 _급				
19 3 1. 급행근케 네동([세주으로)·					
20. 검거경위(1)현행범으로 검거(4)제3자의 신고	(2)본인이 자수 (5)경찰 등의 인 ²		(3)가족·친척 (6)다른 사건		<u>}</u>	
O1)] 7] H])] 4])] 7] -]						
21. 사건 발생에서 검거 <i>n</i>		,	(a) adl ala	າ		
(1) 1시간 이내	(2) 1일 이내 (5) 15이 이네		(3) 3일 이년 (6) 1개의 6			
	(5) 15일 이내		(6) 1개월 여 (c) C케임 6			
(7) 3개월 이내	(8) 6개월 이내	((9) 6개월 ㅇ	1.9.		

E. 형사사법절치	-	
1. 구속여부 (1) 구속	(2) 불구속 (3) 보석	
	여부 ·구약식)/감호청구 (2) 기소유예 (5) 죄가안됨 (6) 공소권없음	
	기소중지의 사유 (구체적으로: 음의 사유 (구체적으로:	
	(2) 징역(3) 징역형과 집행유예(6) 징역형과 벌금형(7) 벌금형	
4-2. 집행유예	_년월 ==>(월환산 :월) :년월 ==>(월환산 :월) : (1) 유 (2) 무 만원	
	류 (2) 징역 (3) 징역형과 집행유예 (6) 징역형과 벌금형 (7) 벌금형	
6-2. 집행유예	_년월 ==>(월환산 :월) :년월 ==>(월환산 :월) : (1) 유 (2) 무만원	
	(2) 징역(3) 징역형과 집행유예(6) 징역형과 벌금형(7) 벌금형	
8-2. 집행유예	_년월 ==>(월환산 :월) :년월 ==>(월환산 :월) : (1) 유 (2) 무만원	

			(4) 징역형과 치료감호(8) 기타:	
9-1. 항소인 (1) 피의자	(2) 검사	(3) 쌍병	Ŋ·	
10. 2심선고량 10-1. 징역:년월 ==>(월환산:월) 10-2. 집행유예:년월 ==>(월환산:월) 10-3. 치료감호: (1) 유 (2) 무 10-4. 벌금:만원				
			(4) 징역형과 치료감호(8) 기타:	
11-1. 상고인 (1) 피의자	(2) 검사	(3) 쌍병	g}-	
12-2. 집행유예	년월 ==> (월: :년월 ==> : (1) 유 (2) 만원	(월환산 :월)		

직업분류코드표

전문/기술직 (01)자연 및 기술 관련 엔지니어 (02)대학교수·연구원 (0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04)수의사, 약사, 간호사 (05)회계사, 변호사, 판사, 검사 (06)교사 (07)종교인 (08)언론인 (09)체육인, 예술가, 연예인 (10)항공기/선박 승무원 (11)기타 전문직(학원강사, 프로그래머) 행정/관리직 (21)기업체 경영주(5인이상 고용) (22)대기업체 간부(부장 이상) (23)고급공무원(중앙과장, 지방국장 이상) (24)사회단체간부 (25)군인(영관급 이상), 경찰(경정 이상) (26)사무관견 사업체 경영(5인 미만 고용) (27)기타 행정/관리직 사무직 (31)일반사무직원(과장 이하) (32)일반공무원(사무관이하) (33)사회단체직원 (34)경리 및 출납원 (36)전화 및 우편 사무원 (35)운송 및 통신관리원 (37)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경감이하) (38)소방수, 간수 (39)기타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41)소·도매상인 (42)판매점원 (43)부동산 중개인 (44)판매대리인 및 외판원 (45)행상, 노점상 (46)기타 판매직 주인 (51)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 (52)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53)이·미용사, 세탁소, 목욕탕 (54)청소원, 파출부 (55)보안업무 종사자, 수위, 경비 (56)기타 서비스직 주인 농어직 (61)부농(2정보, 6000평 이상) (62)중농(1-2정보, 3000-5999평) (63)소농(0.5-1정보, 1500-2999평) (64)빈농(0.5정보, 1500평 미만) (65)농업노동자, 품일꾼 (66)낙농업자, 양계, 원예, 과수원 (67)선주 및 수산양식업자 (68)어부 및 수산업 종사자 (69)기타 농어업직 생산직 (71)생산직 사업체 경영자(5인 미만) (72)생산감독(주임 및 반장) (73)숙련기능공 (74)견습공, 비숙련공 (75)막노동자, 단순노무자 (76)운전사(자동자, 중장비) (77)광부 (78)기타 생산직 미취업 (81)학생 (82)주부 (83)군인(사병) (84)무직(실업)

(99)분류불능 (무엇:____

(85)정년퇴직, 연금생활자

분류불능

(86)기타 미취업자